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
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
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,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도록 「자동차관리법」을 개정함에 따라,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자의 부정신고,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신설(별표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0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6조제5항”을 “제66조제6항”으로, “자동차제작자등 및”을 “자동차제작자등,”으로, “매매정보제공자”를 “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취소”를 “취소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”로, “정지”를 “정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동차·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매매정보제공자”를 “매매정보제공자,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”로 한다.

별표 제5호8) 중 “법 제58조제7항”을 “법 제58조제9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다목바)를 삭제하며, 같은 란 사)부터 자)까지를 각각 바)부터 아)까지로 하고, 같은 란 바)(중전의 사)) 중 “법 제58조제4항”을 “법 제58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별표 제5호라목다) 중 “법 제58조제5항제1호”를 “법 제58조제6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란 마)(중전의 라)) 중 “법 제58조제5항제2호”를 “법 제58조제6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란 중 “법 제66조제1항제14호라목”을 “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”으로 하고, 같은 란 바(중전의 마)) 중 “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”을 “법 제66조제1항제14호바목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) 법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4호제라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--	------------------	--

같은 표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자동차 성능·상태 점검자	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	법 제66조제5항제1호	사업장 폐쇄	
	나.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	법 제66조제5항제2호	사업장 폐쇄	
	다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	법 제66조제5항제3호	사업장 폐쇄	
	라.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	법 제66조제5항제4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	

	한 경우		3차: 사업장 폐쇄
	마.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5항제5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	바. 법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·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5항제6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20일 3차: 사업정지 30일
	사. 법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·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	법 제66조제5항제7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사업장 폐쇄
	아. 법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을 한 경우	법 제66조제5항제8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60일
	부 칙		

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자동차 관리법」 제21조제2항·제30조 의6제2항·제45조의3제4항·제 47조제6항 및 <u>제66조제5항</u> 에 따 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, 대체 부품인증기관, 자동차검사대행 자, 지정정비사업자,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, 자동차관리사업 자, <u>자동차제작자등</u> 및 온라인 자동차 <u>매매정보제공자</u> 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 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 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66조제6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자동차제작자등</u> , ----- ---- <u>매매정보제공자</u> 및 자동 <u>차성능·상태점검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증거에 의한 처분) ①관할 관청은 「자동차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, 법 제30조의 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 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, 법 제45	제3조(증거에 의한 처분) ①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
 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
 한 지정의 취소, 법 제47조제5
 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
 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, 법 제66
 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
 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
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
 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
 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온라
 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
 한 등록의 취소(이하 “등록등의
 취소”라 한다), 법 제21조제1항
 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
 에 대한 사업의 정지, 법 제30조
 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
 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, 법 제
 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
 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
 대한 업무의 정지, 법 제47조제
 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
 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, 법 제
 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
 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
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
 차제작자등에 대한 사업의 정지

----- 취소 또는 같은 조 제
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·상태접
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-----

매
매 정보제공자, 자동차성능·상태
점검자

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

(044) 201 - 3856